



글_이지수 (신한관세법인 관세사 / www.customsservice.co.kr)
 현재 신한관세 법인에서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다.
 한국휴렛팩커드(주)와 한국애질린테크놀로지스(주)에서 근무했다.

사례로 알아보는 수출입과 관세 (1)

그냥 들고 들어와도 되나요?

몇 해 전 중국에서 한국산 휴대폰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뉴스를 장식했던 때이다. K사 모과장이 이 뉴스를 듣다 문득 생각했다. '중국 출장 갈 때 중국휴대폰을 잔뜩 숨겨 갖고 가서 팔면 돈 좀 되겠군?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?

“사례로 알아보는 수출입과 관세”에선 이런 상상이나 사례가 관련 법령에 어떻게 적용 되는지, 흔히 벌어지는 사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. 이번 호에서는 **관세법 241조 수출입신고제도**에 관한 이야기다.

A사는 중견 광고 기획사이다. A사의 강 사장은 중요한 고객사에서 광고를 수주하면서, 이 광고용 경품으로 가방 300개도 함께 납품할 것을 약속했다. 마침 경품 쪽 사업에도 관심이 있던 터라 좋은 기회라 생각한 강 사장은, 마침 잡혀있던 중국 출장을 잘 이용해 보고 싶었다. 출장 갈 때 이민 가방을 챙겨가서 업무 후에 중국 시장에서 경품으로 적당한 가방을 구해 가져간 이민가방에 넣어서, 부칠 것도 없이 그냥 들고 들어오면 가격도 낮추고 복잡한 것 없이 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.

며칠 후 인천공항 입국통로에서 강 사장은 커다란 이민가방을 끌고 있었다.

“어, 선생님 이거 뭐가요? 가방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?”

트렁크를 열어 본 세관공무원의 말에 강 사장은 정신이 번쩍 났다.

‘미화로 400불이 넘었으니 기내에서 나눠 줬던 그 종이에다 신고했어야 했나?’

외국물품(여기서는 가방)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때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. 그러나 수입신고는 우리가 비행기에서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간이하게 하거나 목록 통관처럼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.

그러면 강 사장의 가방은 수입신고를 간이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건가? 아니다.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, 선물용으로 인정되는 수량, 가격의

물품,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, 화장품 등 일정한 경우에만 여행자휴대품으로 수입신고가 간소화 되거나 생략된다.

강 사장의 사례는 수출입 거래가 많은 업체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. 통관부서와 따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래 업체에 출장 가는 때 가벼운 자사 제품을 들고 신고 없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.

수입신고와 수출신고는 관세부과와 관세정책 수립과 적용을 위해 각 나라가 형태는 다르지만 의무화하고 있는 절차이다. 이러한 목적에 따라, 신고서에는 수출입자에 대한 정보와 납세의무자, 수출입 물품, 과세가격과 세율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, 보통 이 신고서에 운송서류와 송장을 첨부하게 하고 있다.

이러한 신고절차 없이 수출입 하는 것을 ‘밀수(Smuggling)’라고 하고, 관세 회피 목적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밀수출입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된다. 다행히 우리의 강사장은 절차를 모른 것이 인정되어 가방을 세관에 유치시키고, 공항에서 수입신고와 세금 납부 절차를 거친 후 가방을 갖고 올 수 있었다. 그렇지만, 생각지도 못했던 번거로움과 비용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했음을 통감했다.

휴대폰을 숨겨 중국 가서 팔려고 하는 모과장도 이제는 알 것이다. 적절한 수출입 신고가 없으면, 난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……

신한관세법인

신한관세법인은 1965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고(最古)의 관세법인으로 서울, 부산, 인천공항 및 인천경기 지사를 두고 있으며, 한국아이비엘, 듀폰, 유한킴벌리 등 굴지 기업의 무역컨설팅을 대행하고 있다. 2008년 4월에는 업계 최초로 FTA에 관련된 실무지식을 일반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는 FTA GATEWAY 홈페이지(www.ftagateway.co.kr)를 개설했고, 관세사로 이루어진 FTA TF팀을 통해 FTA관련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.